

#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
## 심 사 보 고 서

1992. 12. 24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2월 17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2년 12월 21일(원 안)

1992년 12월 23일(수정안)

다. 상정의결일자 : 제21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(92. 12. 24) 상정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꺾 소 득)

가. 제안이유

'92년도 세입, 세출예산 중에서 세입 징수액 및 국·시비보조금의 추가 내시 등에 따라 국·시비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의 정리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

1) 일반회계

## □ 세 입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| 분     | 예산액    | 구성비  | 기정예산   | 구성비  | 3회추경  | 증감률  |
|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
|   | 계     | 48,920 | 100% | 44,992 | 100% | 3,928 | 8.7% |
|   | 지방세   | 9,779  | 19.9 | 9,779  | 21.7 | —     | —    |
|   | 세외수입  | 11,858 | 24.1 | 11,858 | 26.3 | —     | —    |
|   | 경상적세외 | 3,551  | 7.2  | 3,551  | 7.9  | —     | —    |
|   | 임시적세외 | 8,307  | 16.9 | 8,307  | 18.4 | —     | —    |
|   | 조정교부금 | 12,412 | 25.3 | 12,412 | 27.6 | —     | —    |
|   | 보조금   | 14,871 | 30.7 | 10,943 | 24.4 | 3,928 | —    |
|   | 국고보조금 | 3,434  | 7.0  | 3,215  | 7.1  | 219   | —    |
|   | 시비보조금 | 11,437 | 23.7 | 7,728  | 17.3 | 3,709 | —    |

## □ 세 출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| 분     | 예산액    | 구성비  | 기정예산   | 구성비  | 3회추경  | 증감률  |
|---|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
|   | 계     | 48,920 | 100% | 44,992 | 100% | 3,928 | 8.7% |
|   | 의회비   | 409    | 0.8  | 415    | 0.9  | △ 6   | △1.4 |
|   | 일반행정비 | 12,658 | 25.9 | 12,718 | 28.3 | △60   | △0.7 |
|   | 사회복지비 | 10,077 | 20.6 | 9,798  | 21.8 | 279   | 0.8  |
|   | 산업경제비 | 1,498  | 3.0  | 1,507  | 3.3  | △ 9   | △0.6 |
|   | 지역개발비 | 22,367 | 45.8 | 18,614 | 41.4 | 3,753 | 20.2 |
|   | 문화체육비 | 392    | 0.8  | 426    | 0.9  | △34   | △8.0 |
|   | 민방위비  | 639    | 1.3  | 655    | 1.5  | △16   | △2.4 |
|   | 지원및기타 | 880    | 1.8  | 859    | 1.9  | 21    | 5.4  |

2) 특별회계 : 변동없음.

3) 명시이월 사업비 ..... 6,032,650천원

• 동사 부지매입(2개동) ..... 1,123,000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• 구민운동장 조성 .....                   | 68,340    |
| • 장림1동 어린이 놀이터 설치 .....            | 17,000    |
| • 보육시설 증축(하단 어린이집) .....           | 84,135    |
| • 보육시설 증축(대지 어린이집) .....           | 273,655   |
| • 괴정천 잔여구간 복개(2차) .....            | 3,310,000 |
| • 감천삼거리~아미고개간 도로확장공사 .....         | 1,116,520 |
| • 하단(구)동사뒤 소방도로개설 편입토지 재결보상 .....  | 25,000    |
| • 다대동 874번지일원 도로개설 편입토지 재결보상 ..... | 15,000    |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 흥 복)

- ☐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, 세외수입, 보조금 등으로 분류되어 예산초과 징수액 및 국·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계상 하였고
- ☐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제1장 의회비부터 제8장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이르기까지 소관별로 분류하여 직원 인건비등 법적 필수 경비의 정리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등을 위하여 예산편성
- ☐ 세출부분은 주민 숙원사업과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등에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### 5. 토론요지 : 없 습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